

의왕시 고시 제2016- 54호

## 의왕 장안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 수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고시 제2013-97호(2013.04.12.)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고, 의왕시고시 제2013-96호(2013.08.12.) 및 제2014-49호(2014.06.30.)로 개발계획(변경), 경기도고시 제2014-289호(2014.10.31.)로 실시계획 인가 및 의왕시고시 제2015-107호(2015.10.30.)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수립된 「의왕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제17조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 의왕 장안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 수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의왕 장안지구 도시개발구역 (변경없음)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가. 위 치 : 경기도 의왕시 삼동 71번지 일원
  - 나. 면 적 : 269,234㎡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부곡지역 주거기능 강화 및 자족기능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접산업시설인 의왕첨단산업단지, 현대로템연구소, 철도기술연구원 등의 배후주거단지로 조성하고자 함.
4.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없음)
  - 가. 시행자 : 의왕장안프로젝트금융투자(주)
  - 나. 소재지 : 경기도 의왕시 경수대로 257, 201호 (고천동, 대영골든벨리)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
  - 가. 시행기간 : (기정) 구역지정일(2013. 04. 12.) ~ 2016. 12.  
(변경) 구역지정일(2013. 04. 12.) ~ 2018. 12.
  - 나.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구 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비고
합 계	269,234	100.0	
주택건설용지	117,941	43.8	
단독주택	23,711	8.8	
공동주택	85,594	31.8	
준주거시설	8,636	3.2	
도시기반시설용지	135,470	50.3	
도 로	56,697	21.1	
주 차 장	2,175	0.8	
공원·녹지	51,804	19.2	
광장·공공공지	4,214	1.5	
하 천	12,677	4.7	
공공청사	3,171	1.2	
사회복지시설	1,521	0.6	
유 치 원	-	-	
학 교	3,211	1.2	
기타시설용지	6,276	2.4	
도시지원시설용지	9,547	3.5	

※ 개발계획도 : 덧붙임(계재생략)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8.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9. 법 제11조 제8항 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해당없음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의 장소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1)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공휴일 포함)

2) 공람장소 : 의왕시 특구사업과

11.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은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따름

12. 그 밖의 사항

가. 의왕 장안지구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S=1:1,000) : 게재생략(경기도 고시 제2013-97호)

## ㉔ 의왕 장안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의왕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 2.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부곡지역 주거기능 강화 및 자족기능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접산업시설인 의왕첨단산업단지, 현대로템연구소, 철도기술연구원 등의 배후주거단지로 조성하고자 함.

###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 경기도 의왕시 삼동 71번지 일원

나. 면 적 : 269,234㎡

### 4.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가. 시행자 : 의왕장안프로젝트금융투자(주) 대표이사 노 석 순

나. 소재지 : 경기도 의왕시 경수대로 257, 201호 (고천동, 대영골든벨리)

### 5.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 (변경)

가. 시행기간 : (기정) 구역지정일(2013. 04. 12.) ~ 2016. 12.

(변경) 구역지정일(2013. 04. 12.) ~ 2018. 12.

나.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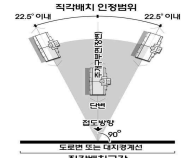
6.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공동주택용지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A1 ~ A3	-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li> </ul> </li> <li>「주택법」 제2조, 제8호 및 제9호,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부대시설, 제5조 복리시설 (제1호 중 종교집회장, 제조업소, 제2호 제외)</li> </ul>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li> </ul>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의 건폐율은 &lt;표 1&gt;에 따른다.</li> </ul>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의 용적률은 &lt;표 1&gt;에 따른다.</li> </ul>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는 &lt;표 1&gt;에 따른다.</li> </ul>	
		주택규모 및 세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획지별 주택규모는 &lt;표 1&gt;에 따른다.</li> <li>각 획지별 세대수는 &lt;표 1&gt;을 초과할 수 없다.</li> <li>공동주택용지의 평균면적은 세대수 및 용적률 산정을 위한 면적이다.</li> </ul>	
		건축물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주택용지의 각종 건축물의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li> <li>배치구간 적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용지 내 배치구간에 주동(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도로측에 접한 면이 주거동의 측면(단면)으로서 2호까지를 기본 단위로 한다)이 걸친 경우, 적용기준은 각각의 배치구간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며, 정해지지 않은 구간에 대하여는 배치구간 경계를 기준으로 주동의 수평투영면적 중 50% 이상이 포함된 배치구간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또한 주동의 수평투영면적이 각각의 배치구간에 같은 면적 비율로 포함 될 경우에는 층고제한이 강화된 배치구간 기준을 따라야 한다.</li> </ul> </li> </ul>	<p>&lt;공동주택용지 내 배치구간 경계에 주동이 걸친 경우 적용기준 예시도&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저층배치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저층 배치구간은 10~15층 이하의 층수로 아파트를 배치하여야 하는 구간을 말하며, 중층 배치구간 내에는 지정된 층수 이하의 아파트를 배치하여 주변지역의 일조 확보 및 소음영향 저감 등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한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탑상형아파트 배치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탑상형아파트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li> <li>- 지정목적 : 단지내 개방감 및 지상공간의 쾌적성, 도시공간의 인지성, 상징성을 확보하기 위해 ‘탑상형 아파트배치구간’ 을 지정한다.</li> <li>- “탑상형 아파트배치구간” 이라 함은 탑상형 아파트를 배치하는 구간을 말하며 탑상형이 아닌 아파트를 함께 배치할 수 있다. 이때 탑상형 아파트는 70% 이상 (주동수 기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li> <li>- “탑상형 아파트” 는 공동주택단지의 다양한 경관 연출 및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한 아파트를 말한다.</li> </ul> </li> </ul>	<p>&lt;탑상형아파트 평면비&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개의 ‘코아’ 를 이용하는 1개층의 세대수가 3호 이상이며, 평면상 단변(D1)과 장변(D2)의 비례가 1 : 2이하 이어야 한다.</li> <li>장변의 길이와 건축물 높이의 비례가 1 : 2이상 이어야 한다.</li> </ul>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A1 ~ A3	-	건축물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각배치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각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li> <li>- 지정목적 : 지역 간 통과교통을 처리하는 간선도로변 차량 소음 등의 환경 악영향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고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직각배치구간을 지정한다.</li> <li>- “직각배치구간” 이라 함은 직각배치구간의 공동주택이 면한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공동주택의 장변이 직교하여야 하는 구간을 말한다.</li> <li>- “직각배치” 라 함은 건축물의 수평단면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li> </ul> </li> <li>• 판상형, 절곡형 또는 타원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에 대하여 건축물의 주개구부면(또는 장변)이 직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때 접도방향에 대해 <math>\pm 22.5^\circ</math> 범위 내인 경우 직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li> <li>• 원형 또는 정방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이루는 직교선 (접도방향)에 대하여 건축물 주동의 주개구부면의 이등분선이 직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때 접도방향에 대해 <math>\pm 22.5^\circ</math> 범위 내인 경우 직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li> <li>•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용지의 대지외곽경계 중 도로변에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주행차량 소음저감을 위한 조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보행자전용도로와 공원, 기타 대지내 공지 변에는 ‘쾌적한 보행환경과 풍부한 녹지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li> <li>- 공동주택용지의 대지 외 각 경계 중 모퉁이 변에는 결절점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한다.</li> <li>-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은 공동주택(주거동)에 한하며 그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따른다.</li> <li>- 지침도상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와 부대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의왕시 건축조례」를 따른다.</li> </ul> </li> <li>•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li> <li>- 지정목적 : 보행활동이 활발한 생활가로변을 대상으로 상업활동 활성화와 생기 있는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한다.</li> <li>- 부대복리시설 집적구간에는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등 복리시설을 70%이상 집적시켜 활성화된 가로경관을 연출하도록 한다.</li> <li>- 부대복리시설은 생활가로에 면하여 2층 이하로 건축하되, 주거동 하부에 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부대복리시설 집적구간에 조성되는 아파트의 층수는 10층 이하로 계획한다.</li> </ul> </li> <li>• 통경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경구간”이라 함은 주요 조망축으로의 시각통로를 확보하고 개방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상 건축물의 건축을 금지하는 구간을 말한다.</li> <li>- 통경구간의 설치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통경구간내에는 공동주택 및 단지내 부대복리시설과 같은 일체의 건축물 (지상부만 해당됨)을 설치할 수 없으며,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은 통경구간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휴식을 위한 벤치 및 휴게시설의 설치에 예외로 한다.</li> <li>나) 통경구간에는 폭원 4미터 이상의 보행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때 공공보행통로는 외부의 보행체계 및 자전거도로와 연계되도록 한다.</li> </ul> </li> </ul> </li> </ul>


<직각배치 인정범위>



판상형 (타원형)



정방형 (원형)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A1 ~ A3	-	건축물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동의 길이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의 확보, 원활한 통행의 보장, 경관 차폐감의 저감 및 질서 있는 스카이라인의 조성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1개 층의 호수 및 길이(이하'주거동의 길이'라 한다)를 제한하며 그 기준은 4호 연립 이하 또는 60미터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li> </ul> </li> <li>• 주거동의 층수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 주거동내 층수에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층수 변화를 줄 경우 3개층 이상을 권장한다. 다만 과도한 층수차이에 따른 경관적 부조화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주거동내의 층수차이가 1/3 이하가 되도록 한다.</li> </ul> </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 동일 주거동 내의 층수변화 예시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면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동의 입면구성은 &lt;입면의 구분과 입면변화의 기준&gt;의 기준에 따라 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로 구분한다.</li> <li>- 각 부분은 재질, 색채, 입면디자인 중 2개 이상의 요소를 적용하여 각 부분간의 조화로운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때 최상층부는 재질, 색채, 입면디자인 등에서 지붕과 동질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입면의 구분과 입면변화의 기준&gt;</p> <table border="1" data-bbox="475 1279 1358 1473"> <thead> <tr> <th>구 분</th> <th>최상층부</th> <th>기준층부</th> <th>지상층부</th> </tr> </thead> <tbody> <tr> <td>16층 이상</td> <td>최상층에서부터 2개층</td> <td>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td> <td>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td> </tr> <tr> <td>15층~7층</td> <td>최상층</td> <td>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td> <td>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td> </tr> <tr> <td>6층이하</td> <td>최상층부 구분 없음</td> <td>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td> <td>지상1층에서부터 2개층</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코니 설치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면발코니에 의한 단조로운 입면형성을 지양하고 발코니를 활용한 다양한 입면계획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li> <li>· 주동 측벽에 발코니를 계획하는 등 발코니의 배치를 이용한 다양한 주동 입면구성</li> <li>· 발코니의 형태 및 색채 등의 변화를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li> </ul> </li> <li>• 주동형식의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의 획일적 경관과 단조로움을 피하고 주동 형식의 다양화를 위하여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li> <li>· 주동형태를 차별화하여 주동형식을 다양화한다.</li> <li>· 주동의 높이가 일률적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층수 변화를 다양화한다.</li> <li>· 하나의 주동 또는 단지 내에서도 다양한 평면 및 단면 형태로 조성하는 것을 권장한다.</li> <li>- 동일 단지 안에서 30세대 이상 또는 5동 이상 일 경우, 주동형식을 2가지 타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li> </ul> </li> </ul>	구 분	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	16층 이상	최상층에서부터 2개층	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15층~7층	최상층	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6층이하	최상층부 구분 없음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1층에서부터 2개층
			구 분	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													
16층 이상	최상층에서부터 2개층	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15층~7층	최상층	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6층이하	최상층부 구분 없음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1층에서부터 2개층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A1 ~ A3	-	건축물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융통형 구조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거주민의 다양한 주거환경 욕구를 원활히 수용할 수 있는 건축구조 및 설비구조를 도입 할 수 있다.</li> <li>- 융통형구조의 세대조건은 다음에서 정한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li> </ul> </li> <li>• 기본 구조체의 전면철거 없이 리노베이션이 가능한 구조를 갖는 세대 또는 주거동</li> <li>• 설비구조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를 갖는 세대 또는 주거동</li> <li>• 단위세대의 평면변화가 용이한 구조를 갖는 세대</li> <li>• 인접 세대와의 부분 또는 전체 통합이 가능한 구조를 갖는 세대</li> <li>• 지붕형태 및 옥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의 지붕형태는 단지 내 통일감 있는 디자인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붕형태를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용마무를 갖춘 물매 1 : 2.5범위에서 조성하며 최상층은 다락방 설치 또는 복층형으로 권장한다.</li> <li>- 탑상형 아파트에 천공부 구조물을 이용한 장식지붕을 설치할 경우, 해당 심의시 장식 지붕 상세디자인을 검토 받아 건축물의 형태와 조화로운 지붕 구조물을 설치한다.</li> </ul> </li> <li>• 담장 및 계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 단지의 경계는 식재 또는 둔덕 등을 조성하여 경계부를 자연스럽게 처리하되, 담장으로 조성할 경우에는 0.8미터 이하의 화관목류 생울타리, 목재 등의 친환경 소재로 한다.</li> <li>- 보행자전용도로변이나 공원 등의 공공옥외공간시설과 접한 부분에는 식수대, 둔덕 등을 조성하여 경계부를 자연스럽게 처리하도록 한다.</li> <li>- 계단의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li> </ul> </li> <li>• 필로티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각적 폐쇄감 해소 및 통경 확보, 주거동에 의한 옥외공간의 단절 완화, 보행통로 연결 등 필요한 곳에 필로티구조 설치를 권장한다.</li> <li>-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완충녹지와 면한 1층부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필로티 구조를 권장한다.</li> </ul> </li> <li>• 색채 및 옥외광고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색채, 옥외광고물 및 공공시설물,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 계획 시행지침 “제3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참조</li> </ul> </li> </ul>
		부대 복리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li> <li>•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공공보행통로나 보행자전용도로변과 같이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li> <li>•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3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단지에서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li> <li>-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1항 각호의 위험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li> </ul> </li> </ul>



<표 1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택규모,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세대수 (기정)

단지번호	주택유형	면적 (m <sup>2</sup>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규모 (m <sup>2</sup> )	평균층수	최고층수	건폐율 (%)	용적률 (%)	공급유형
계	-	85,594	1,687	4,386	-	-	-	-	-	-
A1	60m <sup>2</sup> 이하	7,037	203	528	59~84	-	24층	30	200	국민임대
A2	60m <sup>2</sup> 이하	18,644	327	850	59~84	-	24층	30	200	임대
	60초과 - 85m <sup>2</sup> 이하		89	231	99~113	-	24층	30	200	
A3	60m <sup>2</sup> 이하	59,913	223	580	59~84	-	24층	30	200	분양
	60초과 - 85m <sup>2</sup> 이하		845	2,197	99~113	-	24층	30	200	

- 평균규모는 세대수 산정을 위한 기준임.
-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표 1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택규모,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세대수 (변경)

단지번호	주택유형	면적 (m <sup>2</sup>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규모 (m <sup>2</sup> )	평균층수	최고층수	건폐율 (%)	용적률 (%)	공급유형
계	-	85,594	1,687	4,386	-	-	-	-	-	-
A1	60m <sup>2</sup> 이하	7,037	203	528	59~84	-	24층	30	200	국민임대
A2	60m <sup>2</sup> 이하	18,644	327	850	59~84	-	24층	30	200	임대
	60초과 - 85m <sup>2</sup> 이하		89	231	85~113	-	24층	30	200	
A3	60m <sup>2</sup> 이하	59,913	-	-	-	-	-	-	-	분양
	60초과 - 85m <sup>2</sup> 이하		1,068	2,777	85~113	-	24층	30	200	

- 평균규모는 세대수 산정을 위한 기준임.
-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7.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및 지형도면(S=1/1,200) : 게재 생략

9.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계도서(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등)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의 장소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1)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공휴일 포함)
- 2) 공람장소 : 의왕시 특구사업과

■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